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11.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 4. 1. 김한규의원 등 19인

나. 회부일자: 2025. 4. 2.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 9. 8.)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부

제1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2025. 9. 11.) 상정

제2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2025. 9. 22.) 상정

제4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2025. 11. 20.) 상정 · 축조심사 · 의결(원안가결)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 11. 21.)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한규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하여 기술보호 진단, 보안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문, 관련 분쟁에 대한 보험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음.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7월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운영을 시작하여 기술보호 수준에 따른 기술보호 체계 구축, 비밀유지계약 작성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중소기업 기술보호 진단 결과에 따른 수준별 기술보호 체계의 구축·운영 지원,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 체결 관련 자문 및 우수한 기술보호 사례 발굴·확산에 관한 사업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성소미)

개정안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진단 결과에 따른 수준별 기술보호 체계의 구축·운영지원,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 체결 자문 및 우수한 기술보호 사례 발굴·확산 관련 사업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현행법 제12조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¹⁾.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기술 침해 및 유출 신고의 접수(제1호), 기술보호 진단 및 관련 자문(제2호·제3호), 보안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문(제4호), 분쟁 관련 보험 지원 사업(제5호) 등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규정된 지원사업 이외에도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7월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운영을 시작하여 기술보호 수준에 따른 기술보호 체계 구축·운영 지원 사업,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위한 자문 지원 및 우수사례 홍보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먼저, 수준별 기술보호 체계의 구축·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보호가 필요한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수준별 맞춤형 바우처 제공을 통해 선도기업을 육성하고 있음²⁾. 세부적으로는, 기술보호 수준 진단 결과에 따라 중소기업을 3단계(초보·유망·선도)로 구분하고, 기업맞춤형 프로그램에 연계하는 방식으로 바우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다음으로, 중소기업기술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 체결을 위한 자문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기술보호 전문가의 현장방문을 통해 보안 교육

1)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중소기업기술 보호 진단 및 자문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술 침해 및 유출신고의 접수
2. 보안전문가 현장파견을 통한 기술보호 진단
3. 중소기업기술 보호 및 피해구제에 관한 자문
4. 보안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문
5.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분쟁에 대한 보험 지원 사업
6. 그 밖에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 중 중소기업기술에 대한 침해가 우려되거나 발생한 때에는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지정목표(개사/누적) : ('22)30 → ('23)70 → ('24)120 → ('25)180 → ('26)240 → ('27)300

및 비밀유지 계약 체결 자문 서비스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나아가, 중소기업 기술보호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해 법무처 기술보호 설명회를 통해 지원제도 필요성 및 우수 사례를 전파하고 있음.

개정안 제12조제1항은 수준별 기술보호 체계의 구축·운영 지원(제2호), 중소기업기술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 체결을 위한 자문(제6호), 우수한 기술보호 사례의 발굴 및 확산(제7호) 등 중소벤처기업부가 既 수행 중인 중소기업 기술보호 사업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해당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관련 지원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에 동의하는 입장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김원이 위원)

수준별 기술보호 체계의 구축·운영지원 등 현재 실시중인 중소기업 기술보호 관련 지원사업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 심사보고서 불임서류

1.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진단”을 “진단 및 수준별 기술보호 체계의 구축·운영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중소기업기술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 체결을 위한 자문
7. 우수한 기술보호 사례의 발굴 및 확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중소기업기술 보호 진단 및 자문 등)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중소기업기술 보호 진단 및 자문 등) ①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보안전문가 현장파견을 통한 기술보호 <u>진단</u>	2. ----- ----- <u>진단 및 수준별 기술보호 체계의 구축·운영 지원</u>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u><신 설></u>	6. <u>중소기업기술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 체결을 위한 자문</u>
<u><신 설></u>	7. <u>우수한 기술보호 사례의 발굴 및 확산</u>
6. (생 략)	8. (현행 제6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